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127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 이유

힐링랜드 시설사용료의 기준과 감경기준을 추가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나. 주차장 사용료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별표 2, 별표 3)

1) 사용료 신설: 경차, 1,000시시 차량

가) 30분 기준 250원(10분 초과당 100원 추가)

나) 1일 2,500원

2) 50퍼센트 감경: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다.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 신설(안 별표 2)

1)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2) 추가 가능 인원 1실당 2명

3) 별표 3에 따른 감면을 적용 제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2. 11. 3.~11. 2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 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p>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p> <p>① <u>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u></p> <p>③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제5조(입장료 등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 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 기준	사용료		추가 징수 기준	
			성수기	비수기		
1. 주차장	가. 경차 나. 1,000cc 미만	30분	250원		10분 초과당 100원	
		1일	2,500원			
	가.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나.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1일	5,000원			
	가.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나.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2. 산림 휴양관	36제곱미터 (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최대수용 인 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인원 1실당 2명
		52제곱미터 (6명~8명)		140,000원	90,000원	
80제곱미터(10명)		180,000원		150,000원		
3.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별표 3에 따른 감경률 적용 제외	
	52제곱미터(6명~8명)		140,000원	90,000원		
4.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신 설>

감경대상	감경률
「 <u>대기환경보전법</u> 」 제58조제12항에 따른 <u>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u>	<u>50퍼센트</u>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영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함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함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